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1986(본소), 2019나2491(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1986(본소), 2019나2491(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15 선고 2018가단413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연동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호

담당변호사 이소영

변론 종결 2019. 7. 25.

판결 선고 2019. 9. 26.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15. 선고 2018가단4133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파주시 C 임야 2,96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ㄹ) 부분 21㎡ 지상 창고를 철거하고, 위(ㄹ) 부분을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파주시 C 임야 2,96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1㎡에 관하여 2016. 2. 2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1) 제1심에서 소장이 2018. 6. 25. 집행관송달되어 피고가 직접 이를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이 피고에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 2) 제1심법원은 2018. 11.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8. 11. 19. 우편송달되어 피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 3)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지난 2019. 3. 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분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및 제1심판결서를 직접 송달받았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 본인이 고령의 노인으로서 청각장애가 있고, 문맹이며, 치매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인지장애를 겪고 있어 의사능력 및 소송능력을 흠결하였는바, 피고 본인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본인에게 의사능력 및 소송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당시에 이르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위임행위는 피고 본인에게 의사능력 및 소송능력이 없다는 위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하는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6962, 16979 판결 참조),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하는 이상 반소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재판장판사정동혁

판사박기쁨

판사지충현

별지